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일시 2019년 03월 25일(월) 낮 4시
장소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서울 종로구 삼청로 6)
주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주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목차

1.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조사결과 1

이원재 /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전 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장 및 대변인

2.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 11

최현준 / 변호사,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원고인단 워크숍 발제문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조사결과

이원재 /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전 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장 및 대변인

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개요 및 주요 결과들

* 위원회의 활동 개요 및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이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2018년 05월 08일), 위원회 백서 참조

* 아래 내용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1) 위원회 활동 개요

구분	개최 횟수	주요 내용	
전원위원회 회의	34회 2017. 7. 31. ~ 2018.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세척 개정 의결 • 조사개시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직권조사 상경 여부, 각하 여부 심의의결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의결 •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 :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3개 ✓ 전원위원회 회의 :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 심의의결
진상조사 소위원회 회의	40회 2017. 7. 31. ~ 2018.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세척 및 조사 일정 논의 • 조사개시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직권조사 상경 여부, 각하 여부 심의 • 조사결과보고서 심의 • 자료수집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소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건 및 직권사건의 조사개시 여부, 신청사건의 각하 여부, 사전조사 기간 연장 여부 심의 •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여부 심의 •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방안 논의 • 조사 세척 및 조사 일정 논의
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	19회 2017. 7. 31. ~ 2018.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 범위 및 운영계획 논의 • 권고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백서발간 소위원회 회의	10회 2017. 7. 31. ~ 2018.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서 발간 일정 및 자료 수집 방안 논의 • 백서 편집 방향 및 편집 위원 구성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서발간소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서 발간 일정, 편집 방향 및 편집 위원 구성 방안 논의

(2)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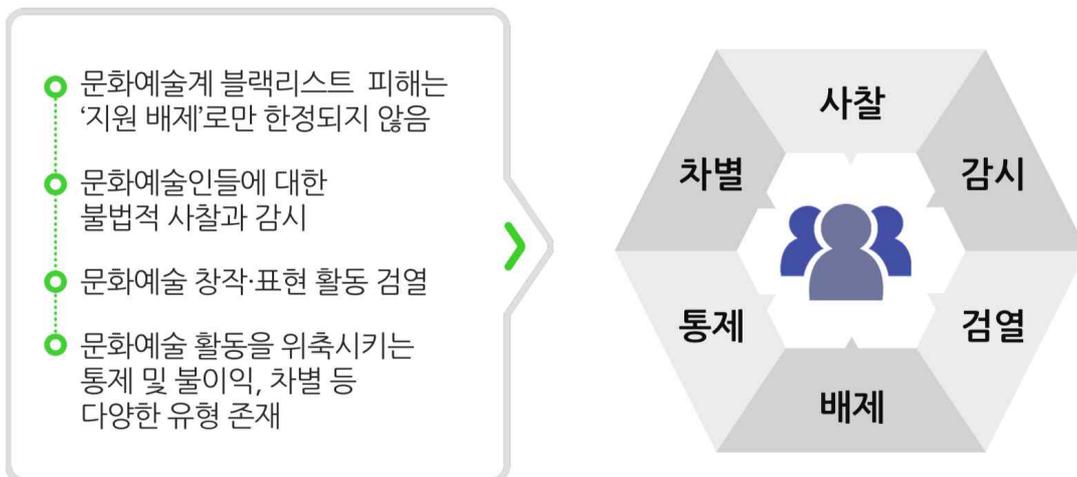
‘블랙리스트’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 (유형의 리스트 형태로 작성되거나 정책 기초 등을 통해 하달된 배제 내용 포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3)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유형



(4)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규모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및 규모

문건명	
①	이명박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②	이명박 국정원, 「문화·연예계정부비판세력」
③	박근혜 청와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④	박근혜 국정원, 「좌성향 문화예술단체인물 현황」
⑤	박근혜 국정원,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인물 현황」
⑥	박근혜 청와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⑦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2014~16)
⑧	9473명 시국선언명단
⑨	박근혜 청와대 경무리스트 113명



(5)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 규모

단체 및 개인 리스트 중복 기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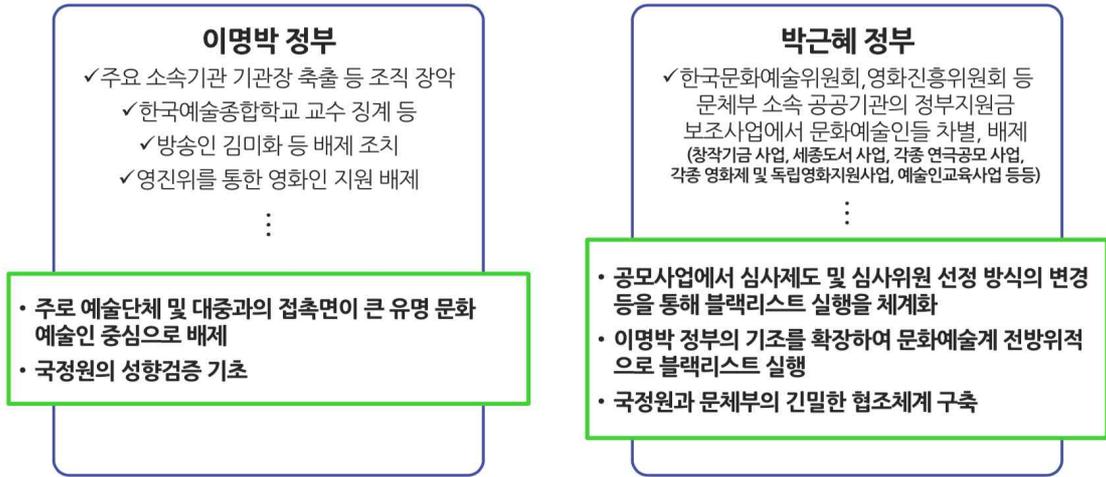
분야(장르)별 규모 비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대상 규모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시국선언 명단을 취합,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1,362 명**에 이릅니다
-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다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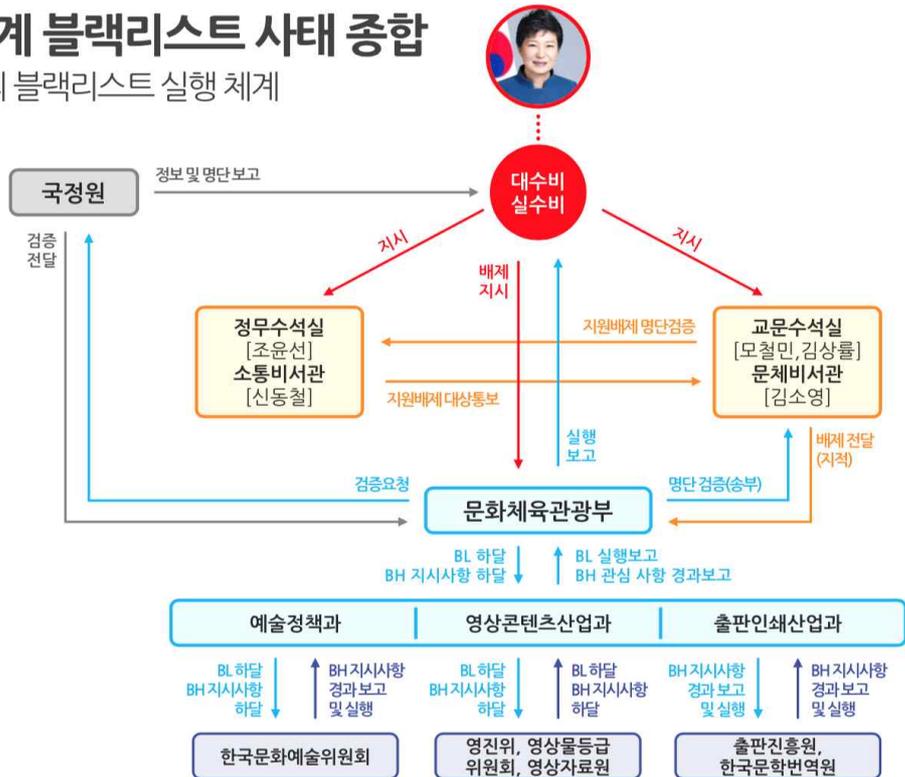
(6)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및 특징



(7)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종합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주요 성과

(1)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피해자 관점, 기록자 관점 중심의 활동

- 위원회 설치 경과 및 목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자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폭로하고,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저항해 온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제안과 활동을 통해 구성되었음
- 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 방향에 있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관점,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치를 통한 운영 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반영되었음
- 위원회는 이처럼 피해자들,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에 접근했으며, 이에 따른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들을 밝혀냈음

(2)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진행

-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 위원회는 진상조사 주요 활동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개적인 조사신청을 비롯하여 위원회 내부의 직권조사 선정, 개별 사건들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지, 이의신청 처리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진행
- 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걸쳐 총 145개(신청사건 112개, 직권사건 33개)의 사건을 조사
- 이 조사과정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밝혀냈으며, 많은 개별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에는 위원회 이전에는 노출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많은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3)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파악, 분석 그리고 의미화

- 블랙리스트 사태는 법원,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음. 하지만 위원회 이전에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별 사건”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구조, 흐름, 책임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음
- 위원회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체, 구조, 경과, 유형, 방법 등을 밝혀내고 정리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문건과 구조 파악’, ‘시국선언 명단 등 블랙리스트 DB의 실체 확보 및 전체 규모 파악’, ‘블랙리스트 사태의 구조와 유형 분석’ 등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파악, 분석, 의미화를 진행하는 성과를 낳았음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와 문화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권고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에 머물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위원회는 활동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사태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파행적인 문화행정 구조에 주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음
-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연구조사, 기관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현장 공청회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도출하고 권고했음. 특히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문화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토론되는 성과가 있었음

(5)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규명 도출 및 권고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규명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들에 권고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국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 있고, 적절한 처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음
- 위원회의 책임규명안은 개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사태 관계자들 개개인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 인사참조 등의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는 책임규명안 권고를 통해 문화행정을 둘러싼 사회적 정의, 공공성, 성찰성, 준법성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

(6)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토론

- 위원회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홈페이지, 각종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과정과 결과물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토론
-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정보공유, 의견수렴, 평가와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이를 통해 위원회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가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한계 및 과제

(1) 위원회 권한의 한계에 따른 미진한 진상조사

- 위원회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조사라는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집행하기에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었음
- 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사권의 부재,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자료들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음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의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캐비닛 자료',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 이후 자료',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세부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견제에 따른 위원회 활동의 위축

- 위원회 활동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상당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중단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했음. 이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음
-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은 또 다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는 조사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둘러싼 조사위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3) 위원회 기간의 한계에 따른 진상조사 범위의 제약

- 위원회는 구성 단계에서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명시하되 3개월 단위의 연장을 통해 충분한 활동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시간상, 범위상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
- 위원회는 앞서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를 비롯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했음. 특히 기존의 오래된 과거사 사건들과는 달리 블랙리스트 사태는 현재성을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자체를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위원회는 12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과 개별 사건들에 대한 세부 조사에서부터 제도개선 방안, 결과보고서 작성, 책임규명안 권고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 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를 비롯하여 많은 한계를 드러냄

(4)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 위원회는 앞서 언급했던 한계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반적인 규모,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사 등은 진행하였지만 아쉽게도 블랙리스트 사태 전체에 대한 개별적이고 충분한 조사 과정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음
- 이에 위원회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블랙리스트 사건들은 아직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존재

- 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로 인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밝혀질 블랙리스트 사건들은 향후 구성될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책임 있게 조사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

(5)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토론 필요

- 위원회는 활동 기간 내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며 의견수렴 및 토론의 공간을 열어왔음

- 그 과정들의 결과물이 현재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안하고 권고한 제도개선안

- 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제한된 시간과 역량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필요한 상황. 특히 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은 기본 철학 자체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적인 협치를 전제로 작성된 내용들

-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자율, 분권, 협치”에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음. 이에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은 그 집행 과정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과 숙의 그리고 협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문화행정 혁신” 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함

4. 위원회 이후, 블랙리스트 대응 활동의 주요 경과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위원회 책임규명 권고 졸속 처리 사태 관련

- 문화부의 책임규명 권고 졸속 처리로 인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2차 피해 등이 지속됨

- 위원회 전 위원들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현장 운동을 통해 재검토, 추가 징계, 추가 사과 등의 성과 거두었음

- 문체부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 노출, 위원회 활동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후속 조치로의 이행에 있어 한계 노출, 현장 문화예술계의 운동 역량 한계와 피로감 표출 등의 문제점 표출

- 위원회의 주요 성과이자 후속 과제들(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발행, (가칭)예술인권리보장법 법제화, 주요 기관 개혁과제 추진 외)에 대한 집중력 약화되고 제도 개혁 동력 약화(문화정책 개혁 이니셔티브 약화), 현장 운동과 문화예술인들 일상과의 분리 심화, 문화예술계의 내적 성찰 부재 등 존재

(2)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문화부 전 미디어정책관)의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 고소·고발 사태 관련

- 한민호 사태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화부 관료주의의 단면 확인
- 한민호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정부, 문화부 등의 미온적이고 수세적인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과정의 결과. 따라서 한민호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심각한 문제

(3) 충북민예총 민사소송 결과 관련

- 1심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등재와 관련하여 1,500만원 배상 선고
- 충북민예총 민사소송 승소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한 보상 문제가 예상보다 조기 부상
- 정부의 항소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문제의식 존재
- 충북민예총 민사소송 이전부터 범문화예술계 차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
- 재판 결과에 대한 프레임을 “배상액”이 아니라 “배상의 법적 정당성”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이번 1심 결과의 배상액 자체는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쟁점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민사소송의 흐름과 관련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가 권력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 “재발방지로서 문화행정 전반의 개혁과 연계”, “보상의 방식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식 검토” 등을 동시에 요구

5. 향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활동 계획

(1) 기본 방향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을 통해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본격화를 계기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의 문제점과 사회적 의미 재확인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본격화를 계기로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중장기적 동력 활성화

(2) 주요 활동 계획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활동 지원팀 구성 및 운영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인단 소통 및 참여 활성화
 - 민사소송 단계별 민사소송인들과의 정보 공유 및 소통 진행
 - 민사소송인단 전체 워크숍, 토론회 등 기획, 추진
 - 일상적인 소통 플랫폼 구축 : 단체 카톡방 개설 등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원고인단 2차 공개모집 활동 : 2019년 4월

- 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블랙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및 백서를 근거로 추가 민사소송 원고인단 공개 모집 진행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기획 활동 추진
 - 민사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 민사소송의 취지 및 법률적 의미(국회 토론회 형식으로 추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권역별 연속 토론회, 민사소송 상황에 따라 쟁점별 토론회 기획하여 추진 등
 - 민사소송 관련 (가칭)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 : 민사소송 과정에 따라 시기 고려하여 배치, 1회가 아니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백서 릴레이 낭독회 등과 연계
 - 민사소송 관련 언론 기획 기사 및 지면화 추진
 - 블랙리스트 대규모 전시회+공연 개최 : 블랙리스트 운동 3주년 등을 고려하여 11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되, 민사소송 상황 고려하여 추진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문화예술인 참관단 활동 진행 : 주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등을 통해 의제화, 여론화 모색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

1. 사건 경과

- 2013. 2. 25. 박근혜 대통령 취임
- 2013. 8.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2015.2 .까지 재직)
- 2014. 4. 16 세월호 참사 발생
- 2014. 4.경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작성 관리
- 2014. 6. 조윤선 대통령 정무수석 취임(2015. 5까지 재직)
- 2016. 10.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
- 2016. 11. 한국일보 -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 보도
- 2016. 12. SBS -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
- 2017. 1. 23. 문체부, 블랙리스트 존재 및 지원배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
- 2017. 1. 30. 특검,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
- 2017. 2. 7. 특검, 피고 김기춘, 조윤선에 대하여 직권남용혐의 구속기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불구속 기소
- 2017. 2. 9. 소장 제출(원고 고연옥 외 448명/피고 대한민국,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후 2차, 3차 원고 모집을 하여 같은 방식으로 소송 진행 중
- 201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채택)
- 2017. 6. 29. 1차 소송 원고 중 11명 소 취하서 제출

- 2017. 6. 30. 원고,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향후 변론 계획_감사원을 상대로 문체부에 대한 기관 감사보고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불법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 제출 및 각 피고 위원회별 '전문가 증인신문', 각 문화예술분야별 '당사자 본인신문' 계획)
- 2017. 7. 3. 1차 변론기일(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속행)
- 2017. 7. 4. 원고, 서증(증거) 제출(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정부 및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운영 및 실행 정황에 관한 각 종 기사)
- 2017. 7. 5. 감사원 상대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채택)
- 2017. 7. 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2017. 8. 23. 감사원 거부 회신
- 2017. 8. 24. 서울고등법원 상대로 관련 형사사건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채택)
- 2018. 1.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조사보고서 등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조사 자료 일체를 문서송부촉탁신청(채택)
- 2018. 2. 12. 대법원 상대로 1, 2심 중 누락된 수사기록 및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및 공판기록을 문서송부촉탁신청(채택)
- 2018. 4. 10.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의 결과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사서류를 문서송부촉탁신청(채택)
- 2018. 5. 10. 국정원 거부 회신(감사 자료는 형사재판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유로 거부)
- 2018. 5. 14.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피고 박근혜의 형사사건 항소심 기록 중 일부를 문서송부촉탁신청(채택)
- 2019. 3. 8. **원고 준비서면 제출**
- 2019. 3. 12. 피고 김기춘 변론기일 연기 신청

2. 소장 및 최근 제출 준비서면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상황

*소제기 배경 : ① 피고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여,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역사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가담한 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다는 선례를 분명히 남기고자 함, ② 블랙리스트 사태로 자기검열의 단계에 이른 문화예술인들에게 다시금 자유로운 양심과 자유를 향한 실천의지 갖게 하여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선 국가배상청구, 나머지 피고에 대해선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로서,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피고들의 위법성 있는 행위,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향후 순차적으로 밝혀나갈 계획

가. 소장 요지

-원고 고연옥 외 448명/피고 대한민국,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청구취지는 원고들 각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사건 초기에는 당시 특검의 재판진행 상황을 보가면서 구체적 주장을 정리할 계획이었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부산국제영화제 지원배제, 광주비엔날레 흥성담 작가 작품작 제재, 좌파성향 영화에 대한 제재)에 대한 주장

-사건 초반에는 주로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원배제에 대해 주장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그 외 여러 건의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의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

-언론보도를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사례를 정리하여 주장

(ex, 원고 박근형, 이운택_아르코기금 선정 부당배제/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 벨' 상영 저지 시도와 상영에 따른 불이익 조치/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다이빙 벨 상영에 따른 지원 배제 등)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위 침해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따라 위자료로 각 100만 원을 일단 청구 (상징적 액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선 추후 지원배제 금액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할 계획을 밝힘

-이후 형사사건 진행 및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및 조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의 자체 조사,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제출을 준비하기 시작

나. 최근 제출 준비서면의 요지

-국정원과 청와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다루었음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입안, 작성, 실행의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선적 제출할 필요성, 이후 준비서면에서 ① 각 피고들의 범죄행위와 위법성, ②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를 밝힐 예정)

-특히, 박근혜, 김기춘, 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 문체부, 문체부 산하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입안, 작성 및 실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

-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여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보도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문체부의 요청을 받아 성향 검증을 하여 지원배제 여부의 결정에 직접적 관여, 문체부에 파견된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IO)을 통해 문체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수시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청와대는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감시하였으며, 국정원의 보고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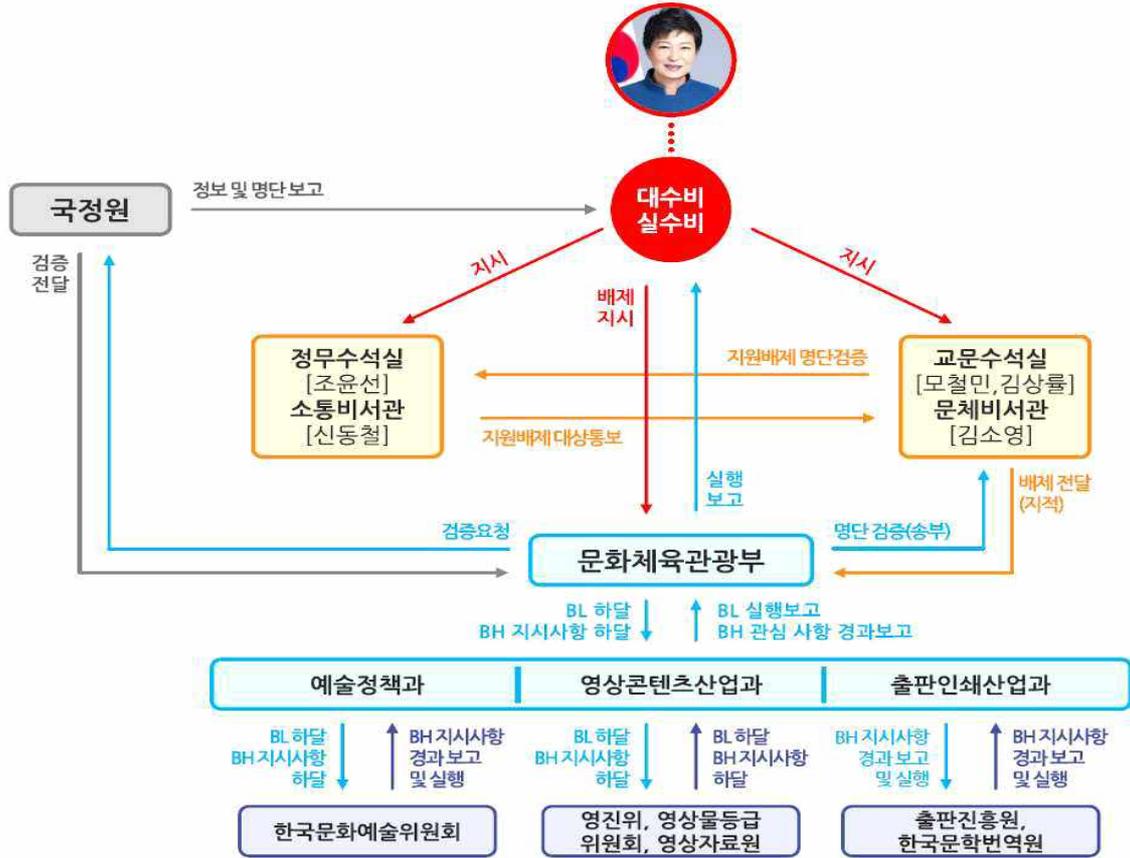
-청와대, 문체부가 협업하여 문체부가 예술위에 지시하고, 예술위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책임심의위원 중 19명의 후보자를 선정에서 배제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015 주목할만한 작가상, 2015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 문체부, 예술위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과정에 대해 주장

-공연예술분야, 영화, 출판, 만화 분야에 있어서 청와대, 문체부와 협력한 예술위, 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구조와 실행에 대한 주장

-청와대, 문체부가 위법성 있는 행위 뿐만 아니라 문체부 산하의 위원회인 예술위, 영진위, 콘진위 등이 자발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주장

다. 블랙리스트 실행체계 및 구조



(ex, 김기춘 비서실장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 방안 지시->정무수석실, 민간단체 보조금 TF 운영,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후 김기춘, 박근혜 보고->정무수석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교문수석실 전달->교문수석실에서 문체부에 전달->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역으로 문체부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교문수석실이 받음->정무수석실에 전달->정무수석실 지원배제자 교문수석실에 통보->교문수석실 문체부에 전달->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
 (구체적 설명 :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신청접수 마감 후 문체부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로 송부하였고,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해당 명단을 청와대· 국정원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과 사무관에게 전달하면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와 국정원은 명단을 검토한 후 배제해야 할 대상을 예술정책과 사무관에게 통보하였고,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통보사항을 다시 각 부서별 사업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사업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은 이를 사업 담당기관에 알려주어 기관에서 명단에 있는 대상자들을 배제)

라.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문건 제목	작성 시기	작성 주체	내용
①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박근혜 정부)	2013.3.10.	민정수석실 국정원	▶피고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확대 시도, 면밀한 대처 필요’라고 청와대에 보고.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피고 김기춘의 ‘특정 성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마련 지시’에 대한 관련 대책(2013. 9)을 작성해 보고하였고 이어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구성함(2013. 9. 9.)
②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현황 및 고려사항」 (박근혜 정부)	2014.3.19.	국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생산한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편향, 사회풍자 등을 이유로 들며,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리스트를 첨부함. (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 10. 30.)
③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박근혜 정부)	2014. 2. ~2016. 9.	국정원 문체부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으로 이름과 함께 소속 등을 기재. 동일인이 겹쳐서 총 163명으로 파악됨. (국정원 개혁위 보고서, 2017. 10. 30.)
④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리스트 (박근혜 정부)	2014. 2. ~2016. 9.	문체부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 보고, 관리한 문건.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에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2014.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2014.1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2014.11.~2016.1., 7여건),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사항 문건(2015. 3.), 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문건 등을 보고함.
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박근혜 정부)	2014. 5.	정무수석실	▶각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드라는 피고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TF가 구성되었는데, 위 TF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소통비서관실 박준태 행정관에게 민간단체 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⑥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박근혜 정부)	2015. 7. 6.	정무수석실	▶‘2015.7.6. 받음’이라고 기재된 문건으로 113명단 기록. 동일인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총 98명의 명단. (※ 예술위가 2014. 10. ‘2015년도 아르크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 공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

⑦ 9,473명 시국선언명단 (박근혜 정부)	2015. 5. 6.	교문수석실	▶2015년 5월 김낙중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선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등 카테고리 지정해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통보, 인터넷에서 명단을 확인하여 장관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할 것을 지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진숙이 9,473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보고.
--------------------------------	-------------	-------	---

*현재 원고 대리인들은 위 문건들 모두를 블랙리스트로 취급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위 리스트 어느 하나에라도 등재되어 있으면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 추후 변경 가능성도 있음

3.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내용

-형사 사건

사건 관여자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는 2017. 1. 30.,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은 2017. 2. 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4. 17. 기소되어, 주된 공소사실인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에 대하여 모두 직권남용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

① 박근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 대법원 2018도14303 계류 중

②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대법원 2018도2236 계류 중

③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판결, 대법원 2018도2236 계류 중

-헌법소원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이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서 제출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느라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

- (주)시네마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122, 원고 : (주)시네마달, 피고 : 대한민국 외 6명)

-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989)

- 민변 광주지부의 원고 39명을 대리한 블랙리스트 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5099)

4. 향후 소송 준비 계획

- 피해자별 위자료 청구금액 조정
-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원고들 ; 100만 원
- 위 리스트에 등재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는 원고들 ; 1,500만 원
- 이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는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추정액을 청구금액에 포함 시킬 예정

- 향후 제출될 준비서면
- 각 피고들의 범죄행위와 위법성
-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역(원고들의 증거 협조가 중요)

- 청주지방법원 판결(2017가합200570) 2019. 1. 24. 선고
- 위 판결에서는 블랙리스트 등재된 원고에 대해선 1,500만 원을, 블랙리스트 등재 및 지원배제된 원고에 대해선 2,000만 원의 각 위자료 또는 비재산적 손해(법인에 한함)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
- 위 판결을 참조하여 향후 재판 준비할 계획

- 소송 비용 관련
- 1차 소송
- 총 청구금액: 7,908,055,000원(79억 805만 5천원)
- 인지대: 25,409,700원(2540만 9700원)

- 2차 소송
- 총 청구금액: 419,908,000원(4억 1990만 8천원)
- 인지대: 1,561,100원(156만 1100원)

- 3차 소송
- 총 청구금액: 232,000,000원(2억 3200만원)
- 인지대: 884,800원(88만 4800원)
- [1~3차 소송 인지대 합계: 총 2785만 5600원]

-원고 소취하 대상자 선별 및 소취하 예정

-4차 블랙리스트 피해 원고 모집 예정(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백서)